

글 심는 순서 Contents

- 02 50여년 만에 열린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
- 04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는 누구도 되돌리기 어려워
- 06 미군 철수, 북핵 폐기, 남북 군축 함께 해결하는 평화협정 체결해야
- 07 주한미군 영구주둔 꺾는 한미당국
- 11 지금은 온 거래가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나서야 할 때
- 12 이런 평화협정 어때요?
- 14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되면 이렇게 좋아져요
- 19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충분히 가능
- 21 평화협정 실현운동, 이렇게 전개합니다
- 22 평화협정 실현운동, 추진위원과 길잡이가 되어 주세요

평화협정 실현운동, 이것이 궁금해요.

- 23 주한미군이 나가면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늘어나지 않나요?
- 24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국이 경제적 보복을 가하지 않을까요?
- 26 주한미군이 나가면 북한이 남침하지 않을까요?
- 28 북한이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요?
- 29 북한이 남한을 미사일로 공격할 수도 있지 않나요?
주한미군이 나가면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지지 않을까요?
- 30 주한미군이 나가면 주변국이 우리나라를 위협하지 않을까요?
- 31 첨부자료 :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시안)

50여년 만에 열린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

- 6자회담의 진전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 6자회담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2005. 9. 19) 제4항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자국의 패권유지를 위해 50여 년 동안 회피해왔던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협의가 한국과 미국 등 관련된 나라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관련 각 당사국의 입장



- 2005년 말~2006년 초,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사이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원칙 합의(동아, 2007. 1. 30)
-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를 다 이루는 것이 가능”(경향, 2007. 5. 9)
- 부시 미국 대통령(시드니 한미정상회담), “나의 목적은 한국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에 김정일 위원장 등과 함께 서명하는 것”(연합, 2007. 9. 7)
- 외교부,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을 2010년까지 이루는 로드맵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연합, 2008. 1. 13)
- 북한 노동신문, “평화협정 체결, 지금이 적기”(연합, 2008. 1. 26)



부시 “북핵 폐기땀 평화협정 체결”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주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시드니/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한겨레, 2007. 9. 7 호주 시드니-한미정상회담〉

-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정세는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적대와 희생을 강요해 온 분단체제가 무너지고 통일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평화협정이란?

- 전쟁을 치른 당사자가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맺는 정치·군사조약. 평화협정 혹은 평화조약은 전쟁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익을 정확한 용어와 조문으로 명백히 정리하게 되므로 전쟁 종료와 함께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만족스러운 방법임.

50년 이상 평화협정을 회피해 온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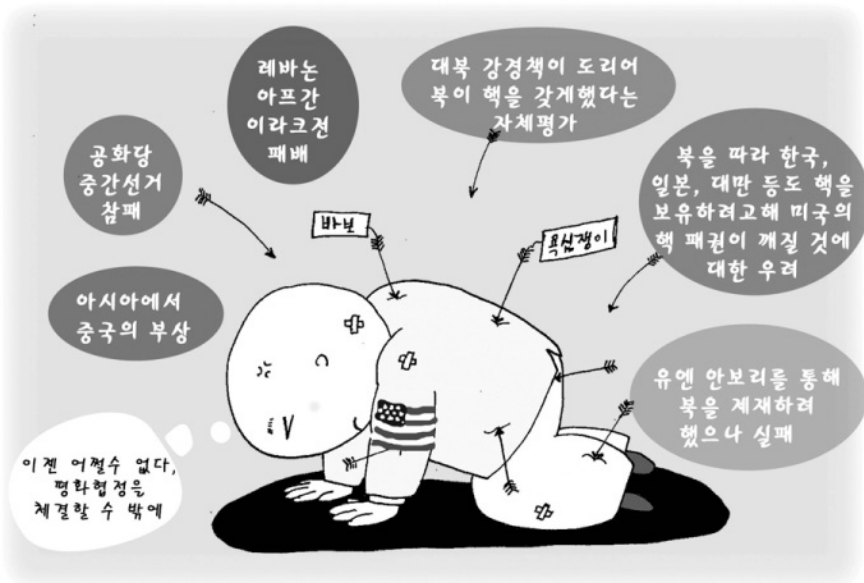
-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4조 60항 :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삼개월 내에……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명시.
- 1954년 4월~6월, 정전협정에 따른 제네바 정치회담 :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려는 미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및 외국군대(미군, 중국군 등) 철수 제안을 거부하여 회담을 파탄 낸.
- 1996년~1999년, 남·북·미·중 4자회담 :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의제로 다루는 것을 거부하여 회담을 파탄시킴.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는 누구도 되돌리기 어려워

- 공화당의 부시정권으로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 경제적 강압을 하기도 어렵고, 그 성공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그 배경은 크게는 냉전 해소와 중국의 성장, 미국 위상의 상대적 약화, 한국 민중의 민족자주의식 성장 등 미국에게 불리하게 변하는 동북아의 상황에서 미국의 새로운 입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가까운 배경은 북한 핵실험의 충격과 미국의 핵 패권 붕괴 위험, 이라크 침략 등 미국의 군사패권정책의 실패, 유엔 등을 통한 북한 제재의 실패, 중국 등 주변국의 강력한 북한 공격반대 의지,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 미국 대선과 대통령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외교적 성과의 필요성 등입니다.
- 또,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6자회담의 진전을 근본적으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실패한 부시정권의 대북 강경책을 되풀이 한다고 해도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다가, 시간을 끌다가는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거나 일본 · 한국 · 대만 등 주변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 경우 미국의 핵 패권이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핵 패권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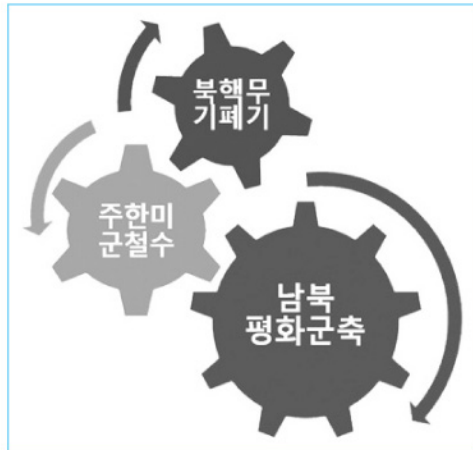
-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개발을 저지하여 핵무기에 대한 독 · 과점을 유지함으로써 비핵국가를 강압하고 통제하는 힘. 미국은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핵확산방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주도함으로써 자국의 핵 패권을 유지해 왔음.



- 북한 역시 50여 년간에 걸친 미국의 봉쇄정책 등으로 힘겨워진 인민생활의 개선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한미연합군의 첨단 공격전력 증강과 공격적 작전 계획과 전쟁연습으로 인한 안보위협도 시급히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미국 등과의 관계개선이 시급합니다.
- 미국은 북미 관계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2007년 11월 중순부터 평양 고려 호텔에 자국 외교관을 처음으로 상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후 북한의 핵 폐기 의사가 분명해지면 이를 정식 연락사무소 또는 대표부로 승격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조선, 2007. 11. 26)
- 부시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를 담당해오던 캐슬린 스티븐스 미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주한미국 대사로 결정한 것도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처럼 누구도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를 근본적으로 뒤집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미 양국은 이미 관계정상화를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 북핵 폐기, 남북 군축 함께 해결하는 평화협정 체결해야

- 한반도 평화협정은 한반도의 확실한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이래 하늘이 내린 형벌처럼 들쭉위진 전쟁의 위험과 군사적 긴장, 소모적 군비경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온 한반도에서 모든 핵무기를 없애고 미국의 핵우산 정책(핵무기를 가진 큰 나라가 가상 적국의 핵 공격 파위로부터 핵무기로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정책)도 폐기해야 합니다. 또, 남북 사이의 재래식 무기의 군축을 통해 상호간에 상대방을 전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특정 지대를 핵무기의 제조·저장·실험·배치·사용 등을 하지 않는 곳으로 만드는 일)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이 **미군 철수, 북핵 폐기** 및 미국의 대북 핵위협 제거, 남북 군축을 함께 해결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한반도의 흔들림 없는 평화를 보장하는 확고한 법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는 남·북·미·중 평화협정 당사국과 국민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이기도 합니다.



주한미군 영구주둔 꺾는 한미당국

-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통일이 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국은 냉전 해소 이후부터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연구와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 미국은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을 이제까지의 대북 방어적 성격에서 세계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으로 바뀌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새로운 근거와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대북 방어적 성격으로는 더 이상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유지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미 당국자들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거나 한미동맹이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공언하는 이유도 미국의 패권적 요구를 평화협정 체결 이후까지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 벨 주한미군 사령관(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미국은 21세기뿐만 아니라 한국과 북한이 평화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경제와 안보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한반도에서 미군 주둔을 위해 상호이익과 공동가치에 기반을 둔 협력적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데일리NK, 2008. 3. 12)
 -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평화체제가 수립된 후에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면서 새로운 동북아 안보 환경에 맞는 역할을 지속 수행하게 될 것" (한겨레, 2007. 10. 27)

“한반도 평화협정 후에도 미군 주둔 희망”

벨 주한미군사령관

버웰 벨(사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반도의 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더라도 한국민이 원하고 환영하는 한 한국에서 군사 임무를 계속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1일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간지 JFQ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평화와 안정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 군사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는 평화와 안정, 안보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존재하므로 미국의 군사적 관여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다른 파트너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주한미군 사령관 부임을 앞두고 겪었던 한미



동맹에 대한 고민도 털어냈다.

그는 “부임 전 한미동맹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한미 양국 간 이해가

엇나가고 있으며 공유점을 찾기 매우 어렵다는 결론을 부분적으로 내렸다”면서 “하지만 부임 후 나의 우려가 근거가 없으며 한미 양국의 이해는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동아일보, 2007. 10. 2)

-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반테러전쟁이라는 허울 밑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 그리고 다른 반미세력들을 포위·봉쇄하고 제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에게도 미사일방어체계(MD) 및 나토 글로벌 파트너십(NATO GP),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이라크 등에 대한 한국군 파병을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 나아가 미국의 숙원인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실현하고, 여기에 호주, 뉴질랜드, 타이완을 끌어들여 아시아판 나토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주도의 ‘범태평양 안보협의체(PAPSU)’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잠재적 적국인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한국을 MD, 나토 글로벌 파트너십, 범태평양 안보협의체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 한미동맹 강화를 앞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이와 같은 미국의 요구에 적극 가담한다면 대미 예측성은 더욱 심화되고 침략적 한미동맹은 가속화되며, 남북 대결은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 주도의 동북아 신냉전 체제의 하수인으로 전략하게 될 것입니다.
-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가 현실화되면 평화협정 체결은 물 건너 가버리거나,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허울뿐인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입니다.
- 이처럼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는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이 두 흐름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 **미사일방어체제(MD)** : 상대방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여 즉각 대항 미사일을 쏘아 자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무기 체계. 그러나 이는 상대방의 공격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을 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서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한 것임. 이에 대해서는 불법성은 물론, 군사적 실효성이나 천문학적 비용, 우주의 군사화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나토(NATO)** :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에 대항하기 위해 1949년에 체결한 북대서양조약의 수행기구.
- **나토 글로벌 파트너십(NATO GP)** : 원래 미국과 서유럽 나라들의 동맹이었던 나토가 냉전 해소 이후 미국의 러시아 포위 전략에 따라 동유럽 나라들로 확장됨. 미국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유럽 이외의 나라인 한국, 일본, 호주 등과 이른바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자고 요구하고 있음. 이는 나토를 통해 미국 주도의 동맹을 세계화하려는 의도임.
-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WMD)의 국제적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공해상에서 의심스러운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 협력체제. 그러나 공해상에서는 해적행위 같은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선박을 멈추거나 검색할 수 없음. 나아가 국제해양법은 공해는 물론 어떤 나라의 영해라 하더라도, 그 나라에 피해(조업, 오염, 정보수집, 군사훈련 등)를 주지 않는 한 방해받지 않고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권리(무해통항권)를 보장하고 있음. 이런 점에서 PSI는 국제법 위반임. 대표적인 네오콘이자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이 입안한 PSI는 애초부터 핵심적으로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를 겨냥한 것임.
- **범태평양 안보협력체(PAPSU)** :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상하이협력기구(SCO)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이명박 당선 이후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체. 미국의 구상이 현실화 되면 동북아에서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자본주의 진영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사회주의 진영 사이에 새로운 냉전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 발전은 매우 어려워질 것임.

지금은 온 겨레가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나서야 할 때

- 지금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내보낼 절호의 기회이자, 침략적 성격의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이 영구화될 수도 있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을 받지 않고 공고한 평화를 이루며 통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그대로 유지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주권 유린과 온갖 예측, 평화의 위협과 군비 경쟁, 남북 분열과 적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며, 분단을 마감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온 겨레의 힘과 지혜를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에 쏟아 부어야 할 때입니다.



이런 평화협정 어때요?

- 여러 학자와 변호사, 활동가 등이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시안)'을 준비했습니다.
- 이 평화협정(시안)은 자주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입장에서 제시된 최초의 평화협정(안)입니다. 이는 50여년 만에 열린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 속에서 주한미군을 내보낼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정세에 대한 절박한 인식과 이에 기여하려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시안)' 무엇을 담고 있나?

- 한국전쟁 참전국이면서,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책임질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이 협정 당사자로 서명.
- 하나의 민족으로서 한국(조선)인의 자주와 주권, 영토보전 및 통일의 권리 규정(1장)
- 전쟁종료와 국제연합군사령부 해체 및 협정 발효 후 3년 내 외국군 철수 명시(2장)
-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관계 청산과 국교 수립 등 관계 정상화와 불가침 규정, 미군 철수와 북핵 폐기 상호 연동 해결(3장)
- 남북 불가침과 경계선 규정, 군사동맹 해체와 관련 조약 폐기 명시, 자주적·평화적 방식의 한(조선)반도 통일 규정(4장)
- 평화시대 설치 및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실시(5장)
- 평화협정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및 국제평화감시위원단 구성(6, 7장)

〈한반도 평화협정(시안) 전문은 첨부자료, 평화협정(시안)에 대한 해설자료는 평통사 홈페이지(peaceone.org) 평화군축자료실 248번 자료 참조〉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시안) 기안자와 제안자

●기안자(가나다 순)

강정구(평화·통일연구소 소장) 고영대(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김승국(평화만들기 대표, 한미관계 연구회 회원) 노정선(연세대학교 교수) 박경순(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박기택(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변연식(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재봉(원광대학교 교수) 이철기(동국대학교 교수) 장경옥(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정상현(한미관계연구회 회원) 조주형(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지도위원, 공군F-15K시험평가단장 역임)

●제안자(가나다 순)

• 국내

강남호(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이사, 한신대학교 교수) 권정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귀옥(한성대학교 교수) 김상곤(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공동의장, 한신대학교 교수) 김세균(서울대학교 교수) 김승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준기(전 민주노동당 당기위원장, 전 신구대학교 교수) 김진한(동국대학교 강사, 현대사연구소 상임연구원) 김한성(교수노조 위원장, 연세대학교 교수)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노중선(4월혁명회 상임대표) 박래균(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박용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배성인(한신대학교 교수) 설창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심재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광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재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정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장연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간사) 장창준(민주노동당 정책연구위원) 조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조돈문(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가톨릭대학교 교수) 조희연(성공회대학교 교수) 최병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최철영(대구대학교 교수) 한홍구(성공회대학교 교수) 황정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해외

고게츠 아츠시(일본, 야마구치대학교 교수) 한호석(미국, 통일학연구소 소장)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되면 이렇게 좋아져요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은 자주와 평화, 복지와 통일 · 번영을 여는 지름길입니다.

● 미국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 착취가 끝나

-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 700여개의 각종 불평등한 한미간 협정 폐기.
-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나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구상(PSI) 가입 강요도 뿌리칠 수 있음.
- 한미FTA를 통해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무력화할 수 있음.
-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원되지 않아도 됨.
- 10조원에 달하는 기지이전비용, 매년 7천억 원이 넘는 방위비분담금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각종 비용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됨.
- 평택미군기지 확장, 무건설훈련장 확장 등으로 인한 주민 생존권 박탈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여중생 압사사건, 성폭행 등 미군범죄와 매향리 폭격장 오염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파괴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짐.



〈2002년 겨울,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두 여중생을 추모하고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

● 한반도에 확실한 평화가 찾아와

- 북한과 미국의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국교가 수립되며, 상호 불가침이 보장되어 대결과 전쟁의 위험이 사라짐.
- 북핵 폐기와 함께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폐기되어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짐.
-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남북 평화군축이 이뤄져 남북 화해와 평화가 다져지고 소모적인 남북 대결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음.
- 분쟁지역인 비무장지대와 서해 해상이 각각 평화지대와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으로 바뀌어 상생과 평화의 장으로 변모.
- 외국군대와의 연합전쟁연습이 중단되어 무력 위협이 사라짐.



● 민생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 미국 퍼주기 비용과 남북 대결비용 등 현재의 과도한 군사비를 1/3수준까지 줄일 수 있음.
- 이 비용을 민생복지비로 전환하면 최저생활보장, 무상의료, 무상교육, 서민 주택 제공이 실현되어 가난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육아 부담과 교육기회 박탈에서 벗어날 수 있음.
- 군 복무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젊은이가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음.

〈미국 퍼주기 비용〉

내역	비용	비고
방위비분담금 ¹⁾	7,415억 원	2008년도 예산
부동산 지원 등 간접지원	7,354억 원	2005년(국방부 통계)
미군기지 이전 비용 ²⁾	3,628억 원	2008년도 예산
무건리 훈련장 확장 비용	960억 원	2008년도 예산
미군탄약 폐기시설 건설비용 ³⁾	47억 원	2008년도 예산
이라크 파병 재연장 비용	447억 원	2008년도 예산
레바논 파병 비용	196억 원	2008년도 예산
워게임 모의센터 분담금	47억 원	2008년도 예산
미국산 무기도입비용 (공중조기경보통제기, F-15K, C4I 등)	3조5천억 원	2007년 통계 (에드 로이스 미 하원의원 발언)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최소 7천억 원	10년 동안 치유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7백억 원
계		연간 약 5조 5,794억 원 이상

1) 우리 아이들 예방접종비가 고스란히 방위비분담금 증액분으로

- 2006년 방위비분담금 6,804억원
- 2007년 방위비분담금 7,255억원으로 방위비 분담금 451억원 증액
 - 0세~6세 아동 무료 예방접종 비용 450억 (2006년 법안 통과, 예산 없다며 시행 못하고 있음)



2) 미군 이사비용 대신 서민들 살 집을

미군기지 이전 비용 최소 7조 7,200억원 = 15만 가구 20명 주택 건설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 약 5,100억원)

3) 미군 쓰레기탄(WRSA) 매입 비용 1조원 중 일부만 줄여도...

2007년 말 국회가 삭감한 복지·교육 관련 예산 총당 가능
 △ 취약 농가 인력 지원 162억 △ 학자금 대출 보증 지원 1,000억 △ 장애인 차량 세금 지원 116억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 지원 100억 △ 사회적 일자리 창출 325억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50억 △ 보육시설 확충 104억

민생복지, 얼마나 좋아지나? (2008년 기준으로 계산)

- 미국 퍼주기 비용(5조 6천억원)을 포함한 국방비(2008년 예산 26조 6천5백억원)를 1/3로 줄이면, 약 18조원의 예산 확보 가능!
- 18조원으로 할 수 있는 일 → 등록금, 건강보험료 걱정 끝!
 - 150만 대학생 무상교육 - 10조 3천5백억원 (2007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 1년에 690만원)
 - 150만 고등학생 무상교육 - 1조 5천억원 (2007년 고등학교 1년 수업료 약 100만원)
 - 1,000만가구 건강보험료 무료 - 6조원 (가구당 평균 건강보험료 5~6만원)

군사비를 1/3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근거

- 공격진영이 방어진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3~7배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군사전문가들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공격형으로 짜여있는 한국군 전력을 방어형으로 바꾸면 군사비를 1/3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
- 인구 8천2백만 명인 독일의 군인수가 28만 명인데 비해 인구 7천만 명인 남북한의 군인수를 합치면 184만 명이나 됨. 이처럼 터무니없이 과도한 군사력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남북의 첨예한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이 해소되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
- 남북의 군인수에 대해 평화체제 단계에서는 남북 각기 24만~28만 명, 통일 단계에서는 남북 통합 24만~28만 명이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국방개혁2020의 문제점과 자주적 국방개혁의 모색』,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2』, 한울, 2007, 203~205쪽 참조)가 있음. 이를 보더라도 국방비를 1/3 수준으로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

● 자주적 통일의 길이 활짝 열려

- 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한미동맹이 폐기되면 자주적 평화통일과 민족 공동의 번영을 약속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 이행이 전면화 됨. 이에 따라 남북은 곧바로 통일의 길이 나아가게 됨.
- 남북 연합·연방 정부와 의회가 구성되고 단일국호 유엔가입이 이뤄짐.
- 중립외교의 길이 열리고 연방군 창설이 준비됨.
- 남북의 경제협력이 전면화 되어 민족 공동 번영의 길이 열림.
- 사회문화적 교류가 전면화 되고 통신과 왕래가 자유로워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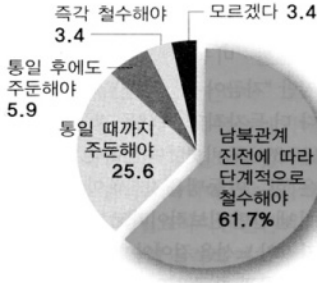
〈2007. 10. 4 평양 - 남북정상회담〉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충분히 가능

-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더 이상 외국군대가 우리 땅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전협정 4조 60항에도 모든 외국군대 철수 문제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현재 남아 있는 외국군대인 주한미군은 당연히 철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분명하고도 설득력있는 명분과 근거를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또,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고, 50년이 넘게 전쟁 위협에 시달려온 북한도 미군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테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도 **“만약 주둔국 국민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우리는 떠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연합, 2008. 2. 14)
- 중국 또한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인 한미동맹을 “지나간 역사의 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중국 역시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는 매항리폭격장과 덕수궁 터 미대사관 건축계획이 우리 민중의 투쟁으로 폐쇄되거나 철회된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 여중생 투쟁 때의 100만 명이 넘는 서명과 10만 명의 광화문 집회 등은 미국 지배층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한미관계를 평등하게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는 정치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2003년 남미의 비에케스 미군 폭격장도 주민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폐쇄되었고, 필리핀에서도 민중의 투쟁과 압력이 바탕이 되어 미군기지가 폐쇄되었습니다.
- 따라서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한반도 평화포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도적 다수의 남측 민중이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히 요구하면 그 실현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주한미군을 내보낼 수 있는 가장 손쉽고 확실한 기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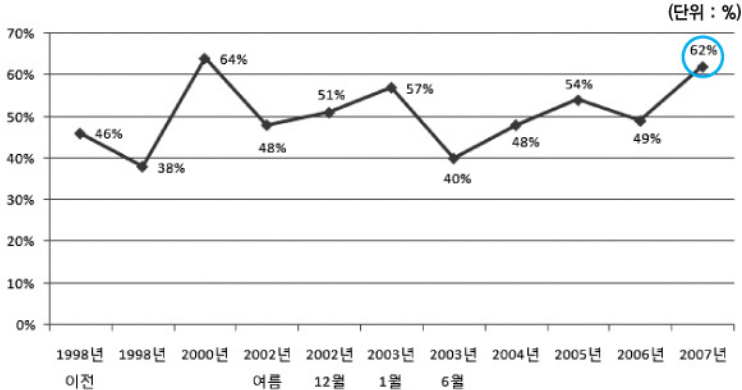
● 우리 국민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언제?(뉴스위크 한국판 2008년 4월 23일자)〉



- 조사방법 : 전국의 만 19세 성인 남녀 800명을 지역·성·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 설문지를 이용해 전화로 질문.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pm 3.5\%$ 포인트.
- 실시기간 : 2008년 4월 7~8일.
- 조사기관 : 한길리서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지지율 변화 (중앙일보 여론조사)〉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여론(국방대 안보문제 연구소)〉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즉각철수	4.9	3.2	10.9	5.0	10.4	8.9
조건부 철수	51.1	60.1	41.2	75.0	70.7	61.6
통일후 철수	24.9	29.7	35.4	14.0	16.2	19.5
통일후에도 계속주둔	4.3	6.7	10.9	6.0	2.6	8.8

● 조건부 철수란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거나 한국의 방어능력을 충분히 구비할 경우에 철수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협정 실현운동, 이것이 궁금해요.

주한미군이 나가면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늘어나지 않나요?

-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북한에 비해 610배나 됩니다.[남한 국방비 218억달러, 북한 국방비 50억원(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2007」), 한국은행 북한 원화 공식환율 : 1달러당 140원]
- 이처럼 주한미군은 이미 과잉전력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이를 메우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국방비를 계속 증액하는 이유는 '북한군 격멸', '북정권 제거'라는 아주 공격적인 작전목적을 달성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방위비분담금, 미군기지이전비용 등 미군에게 퍼주기를 하고 첨단 미제 무기를 대량 구입하며, 이런 전력 운용을 위해 68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주한미군이 나가고, 북핵이 폐기되며 남북이 군축을 이루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공격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은 방어적 전략과 계획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을 궤멸시킬 목적의 대규모 첨단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통일이 되면 인구 8천 2백만 명의 독일이 28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듯이, 현재 남북한 합쳐 184만 명이나 되는 군인수를 24만~28만 명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수 정예의 군대를 꾸리면 주변국으로부터 통일한국을 방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따라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국방비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국이 경제적 보복을 가하지 않을까요?

- 미국이 경제보복을 한다면 무역보복, 미국 자본의 철수, 미국 신용평가 기관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낮추기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먼저, 무역보복의 경우 보복 관세나 한국의 수출 할당량 축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밀접한 상호연관성으로 인해 미국이 무역 보복을 하는 순간 미국도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무역보복을 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미국 자본의 철수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자본은 본질상 이윤에 따라 움직이지, 정치적 이유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오히려 투자환경이 좋아져서 외국 자본이 나갈 가능성보다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미국의 패권정책에 반대하는 정권이 들어선 남미의 여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호황을 누리는 것이 그 예입니다.
- 미국 관련 신용평가회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정치적 이유로 낮추기도 어렵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이 북한 핵위기가 심각하고 반미분위기가 높았던 2003년 초 한국의 신용도에 큰 영향이 없다고 밝힌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 필리핀이나 파나마 등에서 미군이 철수했지만 그로 인해 그 나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 이처럼 **미국이 미군철수를 이유로 경제 보복을 한다는 것은 명분과 수단, 현실적 가능성과 역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북한核·反美, 한국信用度에 큰영향 없어”

S&P 국가신용평가총괄 존 챔버스 상무 현지 인터뷰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에서 국가 신용도 평가를 총괄하는 존 챔버스(Chambers·47·사진) 상무는 7일(현지 시간) “북핵 위기를 반대감정이 한국도의 국가신용도를 떨어뜨릴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챔버스는 상무는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북한 핵실험이 핵실험을 공격할 가능성은 현저도 높지 않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7%대로 높여려면 우선 은행개혁을 서두르고, 주요 재벌 기업들의 재무상태를 더욱 건전하게 유지해야 하는 등 2단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핵 위기가 한국의 국가신용도에 역향할 미칠 가능성은 없는가?”

“현재의 북핵 사태는 전통 일본식 정치가 가진 1940년대와 달리

현한 상황이다. 심지어 북한의 공적 채무는 2000년 한국 전쟁 이후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 신용도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최근 이러한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위험이 당분간 줄어가는 경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나?”

“한국에 적용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객관적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믿는다. S&P가 국가신용도를 평가하고 있는 90개국 중 다수 국가의 국민들이 부식과

통행의 외교 정책을 좋아하지 않

투자자들, 한국 지정학적 위험 이미 감소
평가대상국 대부분 부식외交 안 좋아해
은행민영화·재벌 건전성 유지해야 7%성장

고 있다. 미국 침수로 인한 영향도 과거 칠레보다 더나아 사례를 보면 그렇다. 한국의 경우 우선 미국 침수 가능성이 낮고, 군사 침수를 한다고 해도 한반도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가신용도는 한 국가가 부채를 제대로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에 영향

을 받는다.”

“그렇지만 북핵 사태를 배로로

는 한 미 군에 대해 자기가 상당

한다.”

“국가신용등급 급격한 추락에서 두 가지 위험도를 감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 위험이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실제 공격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영삼의 재선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있다. 둘째는 북한 정권이 과잉으로 북한 내부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을 찾지 못한다면 북한 내부의 불

만은 커질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 내용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3배가 될 정도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이 후 남북 통합(통일)의 평가가 들어 한국에서 빠져 나오

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가?”

“아직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 투자자들 모두 이미 한국

의 지정학적 위험을 충분히 이해

하고 그러한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지켜볼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지켜볼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지켜볼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지켜볼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지켜볼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지켜볼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지켜볼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지켜볼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지켜볼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지켜볼 것이다.”



○ S&P의 존 챔버스 상무는 “국가신용도는 한 국가가 부채를 제때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뉴욕·주한미군사령관
/뉴욕·주한미군사령관

(조선일보 2003. 1. 9)

- 오히려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평화와 통일의 길이 활짝 열려 경제활동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소모적 분단비용을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할 수 있으며,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되어 경제가 더욱 잘 발전할 수 있습니다.
- 2004년 한국은행은 총 850만평이 조성되는 개성공단사업의 1단계 공사 완료 후에는 남측 경제에 연간 생산 9조 4천억 원, 부가가치 창출 2조 7천억원의 직접적 효과를 예측하고 있고 3단계까지 완료된 이후에는 연간 생산 83조 8천억원, 부가가치 창출 24조 4천억원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과 북의 살길이 남북의 협력임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업조차 미국의 갖은 방해(북한의 핵실험 때 사업 중단 요구, 한미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불인정 등)로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만 미국의 방해 없이 남북 경제가 상생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주한미군이 나가면 북한이 남침하지 않을까요?

- 럽스펠드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GDP가 북한의 25~35배나 되고, 전방의 억지력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연합, 2003. 3. 7)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에 반해 북한의 장비는 모두 낡아서 “남침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상실했습니다.”(미 의회조사국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시, 2000년 1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 대담) 위게임 전문가 제임스 더니건은 북한의 전투력이 남한의 약 38%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더욱이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거치면서 북한이 군사요충지인 개성과 해주항을 남측에 개방할 정도로 남북이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위협론’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계속돼야 예산과 일자리를 더 확보할 수 있는 한미 양국의 국방부와 무기업체, 공안기관, 그리고 반복 대결의식이 확산돼야 기득권과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구 정당과 반복 언론 등이 왜곡되고 거짓된 선전을 끊임없이 해대기 때문입니다.

〈남북 군사력 비교를 통해 본 북한 위협론의 허구〉

비교 방식	내용 설명
무기 개수 단순 비교	- 국방부 통계는 북한 무기수 부풀리기, 남한 무기수 줄이기로 신뢰하기 어려움 - 무기의 질적 측면 반영 불가 : “북한군의 무기와 장비는 양적으로 국군보다 1.6배 많지만 육군 무기의 40%, 해군 함정의 70%, 공군 전투기의 65%가 폐기처분 직전의 노후 장비”(육군본부, 『정훈교재』, 1999년)
국방비 누계 (매년 국방비 합계)	남한 당국이 추정하는 북한 군사비(북한 발표의 3배 이상 계산) 누계에 따르면, 더라도 남한이 3배 이상 많음.
종합적 전쟁수행 능력	인력, 경제력, 과학기술력, 행정력 등을 망라한 총체적 국력으로서, 국방부도 1990년대 초부터 남한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국방부, 『국방백서』, 1990년)
기습공격 가능성	탱크 부대, 특수부대, 미사일 공격 등 어떤 방법의 기습으로도 북한이 남한을 이길 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군 주둔 명분의 허구성과 철수의 당위성',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한울, 2005, 231~244쪽 참조〉

북한이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요?

- 미국의 초당적 연구자들이 작성한 대서양위원회 보고서(2007.2)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2002년 핵태세보고서(NPR)나 개념계획(CONPLAN) 8022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 미 국방부가 베트남전 당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의 군사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대입해 보면, 북한 핵무기의 위력은 한국군 기지 한 곳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군사전문가 패트릭 모건은 “북한이 핵을 갖게 된 상황이라 해도 한국의 재래식 억지전력이 실패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 즉,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의 (핵)선제공격에 대비한 것으로서, 전쟁을 막을 정도의 억지력이 될지언정 남한을 공격하여 승리할 정도의 위력은 아닙니다.**
-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6자회담이 진전되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함께 북한도 핵무기를 폐기할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미사일로 공격할 수도 있지 않나요?

- 국방부의 『화·생·방·미사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자료(183쪽)에 따르면 명중률이 낮은 탄도미사일은 실전에서 효과가 없습니다.
-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스커드-B나 스커드-C 수 백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들은 명중률이 낮기 때문에 남한 전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명분의 허구성과 철수의 당위성’,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한울, 2005년, 242쪽)

주한미군이 나가면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지지 않을까요?

- 동북아에서 가장 민감한 군사적 문제는 한반도와 중국-대만 문제입니다.
- 주한미군은 남한 군사력이 북한 군사력을 압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남한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비를 증강하고 공격적인 전쟁연습을 주도하여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전쟁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 포위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는 평택 등 주한미군 기지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미국은 또한, 중국 포위전략에 따라 대만에 첨단 무기를 판매하면서 대만으로 하여금 중국을 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근원은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전력입니다.** 미군은 동북아 균형자가 아니라 동북아 세력균형 파괴자입니다. **따라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주한미군이 나가야 합니다.**
- 중국과 일본의 갈등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수립될 통일한국이 중립외교를 펼치면서 화해시키고 조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나가면 주변국이 우리나라를 위협하지 않을까요?

- 주변국 위협론도 과장이거나 허구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 지상군 전력은 2위, 공군 전력은 8위, 해군 전력은 7위에 해당하는 군사강국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2007」, 2007)
- 이에 비해 일본의 전력은 미국의 동맹국 중 육군 6위, 해군 2위, 공군 5위입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대만에 비해서도 질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명분의 허구성과 철수의 당위성’,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한울, 2005. 244~250쪽 참조) 따라서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이 한국을 침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국위협론’이 계속 퍼지는 이유는 국민의 안보불안을 부추겨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잠재우고 한미동맹을 영구화하여 미국과 한국의 군사비를 늘리려는 한미동맹 세력의 거짓 선전 때문입니다. (중국위협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국위협론의 실체’,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2』, 한울, 2007, 410~444쪽 참조)

뉴스위크 ‘미 국방부 중국 위협론은 과장’ 지적

“미 군비증강 정당화 술책”

“중국, 올해 군사비 미국의 10%...아시아만 전략목표”

중국의 군사비 증액 발표 때마다 나오는 ‘중국 위협론’은 군비 증강을 정당화하려는 미국 국방부에 의해 과장됐

1960년대 문화혁명 기간 중국의 군비 증가율은 연 6%를 조금 웃돌았고, 80~90년 연평균 2% 인파에 지나지 않았다.

향한다는 미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스위크>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인도·파키스탄·북한 등 핵을 보

| 첨부자료 _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시안) |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시안)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하 당사국들이라 한다)은 한국(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규정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조선(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이하 정전협정이라 한다) 제4조 60항의 취지를 존중하여, 반세기 넘게 한(조선)반도에서 이어져 온 정전 상태를 끝내고 전쟁 재발을 방지하며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당사국들은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오래 동안 고통을 받아온 한국(조선)인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평화통일을 이루하는데 이 협정이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나아가 당사국들은 이 협정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면서 이를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1장 한국(조선)인의 기본 권리

1조 한국(조선)인은 자주와 주권, 영토보전, 통일의 권리를 가지며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를 존중한다.

2장 전쟁종료와 국제연합군사령부 해체 및 외국군 철수

2조 당사국들은 1950년 6월 25일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체결로 일시 정지된 한국(조선)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 정전협정은 이 평화협정 발효와 동시에 폐기

된다.

- 3조 ① 미합중국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군사정전 임무를 맡아온 국제연합 군사령부를 이 평화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해체한다.
- ② 당사국들은 국제연합에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1950년 6월 27일 결의 83호(S/1511) 및 1950년 7월 7일 결의 84호(S/1588), 유엔총회의 1950년 10월 7일 결의 376호(V)가 실효되었음을 확인한다.
- 4조 대한민국 영역에 주둔하는 모든 외국군대는 이 평화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3년 안에 단계적으로 그 인원과 장비를 완전히 철수하며 외국군 기지도 모두 철거한다.
- 5조 미합중국은 이 평화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대한민국 영역 안으로 어떤 인원이나 장비도 들여오지 않는다. 다만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 시까지 병력의 1:1 교체를 허용한다.
- 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지원군은 철수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없음을 확인한다.
- 7조 한국(조선)전쟁의 적대 쌍방 당사자들은 전쟁 과정과 정전 기간에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상호 이해와 화해의 정신에 따라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법률적 또는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당사국들은 한국(조선)전쟁 과정 또는 정전 기간에 발생한 인도주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3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 정상화 및 불가침

- 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며 이에 필요한 상호 조치를 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각기 상대방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국내법을 개정 또는 폐지한다.
- 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는다.
- 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서로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 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한(조선)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2·13 및 10·3 합의를 준수한다.
- 12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미합중국은 대한민국 영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철

수시킴과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를 폐기한다.

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분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등하고 공정하게 해결한다.

4장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가침과 통일

14조 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관계를 청산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②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기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나 규정은 개정 또는 폐지한다.

15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는다.

16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분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저촉되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다.

17조 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기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상호 이해와 화해, 평화증진 그리고 국제해양법을 존중한 기초 위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의로 정한다. 세부 사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③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중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④ 위 지상·해상·공중 경계선과 관할구역은 통일 이전까지의 잠정적인 불가침경계선과 관할구역이다.

18조 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기 쌍무 군사동맹을 맺거나 다자간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평화협정이 발효된 때부

터 3년 안에 각기 기존 군사동맹을 해체하며 이와 관련된 조약 또는 협정을 폐기한다.

② 위 1항에서 폐기하기로 한 조약 또는 협정에는 한(조선)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이나 무력 통일을 허용하는 조약 또는 협정이 포함된다.

19조 한(조선)반도에서 외국 군대가 철수하고 외국군 기지가 철거된 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국 군대의 주둔이나 외국군 기지의 설치를 허락하지 않는다.

20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남북(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에 관한 선언'에 따라 한(조선)반도의 통일을 상호 합의 아래 외국의 간섭 없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룬다.

5장 평화지대와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21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은 한(조선)반도에서 전쟁재발의 우려를 완전히 없애고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서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에 관한 조치를 취한다.

22조 ①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는 평화지대로 바꾸며 이 평화협정 체결 전에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군사시설 또는 장비는 모두 철거, 폐기한다. 또 평화지대에서는 병력 주둔이나 군 시설 설치의 허용되지 않으며 군사연습을 포함한 군사활동이 일체 금지되고 민간 통행이 보장된다.

② 평화지대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민간통행 보장과 공동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23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두고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그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해 해상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합의를 존중한다.

24조 한(조선)반도 안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기 어떤 외국군과도 연합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는다.

25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상대방에 대한 기습공격의 우려를 없애고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부대이동, 군사 연습과 훈련의 통보 및 통제,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등을 비롯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시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26조 한(조선)반도에서 군비경쟁을 막고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평화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와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상호군축을 실시한다.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도입 금지, 대량살상무기 및 공격능력의 제거 등 상호 군축의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27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기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접수 또는 배치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지 않는다.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한(조선)반도 비핵화가 지켜지고 공고히 될 수 있도록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6장 평화협정의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28조 ① 이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가 참여하는 4자 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4자 공동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이행을 확인, 점검한다.

1. 국제연합군사령부의 해체(3조)
2. 외국군 철수 및 외국군 기지의 철거(4조)
3. 주한미군 철수 시까지의 미군 병력 교체(5조)
4. 한(조선)반도 비핵화의 준수(11조)
5. 주한미군 철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폐기(12조)
6.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각기 외국군과의 연합 연습 및 훈련 중지(24조)
7.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군축 이행 및 협의(26조)

③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은 4자 공동군사위원회의 구성, 업무절차, 활동수단, 경비, 소재지에 관해 즉각 합의한다. 4자 공동군사위원회는 미군철수가 완료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가 폐기되면 해소한다.

- 29조 ① 이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각기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이행을 확인, 점검한다.
1.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과 그 관리(22조)
 2.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의 관리(23조)
 3.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각기 외국군과의 연합 연습 및 훈련 중지(24조)
 4.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군사적 신뢰구축(25조)
 5.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군축 이행 및 협의(26조)
- ③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의 구성, 업무 절차, 활동수단, 경비, 소재지에 관해 즉각 합의한다.
- 30조 4자 공동군사위원회와 남북(북남) 공동평화관리위원회는 전원 합의의 원칙 아래 활동하며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국제평화감시단에 제출하고 그 조정에 따른다.

7장 국제평화감시단

- 31조 ① 이 평화협정이 이행되는 것을 감독하고 이행 과정에서 당사국들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제평화감시단을 둔다.
- ② 국제평화감시단은 스위스, 스웨덴, 인도, 말레이시아, 브라질 5개국 대표로 구성한다.
- 32조 ① 국제평화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이행 상태를 감시·감독하고, 이를 당사국들에게 보고한다.
1. 국제연합군사령부의 해체(3조)
 2. 외국군 철수 및 외국군 기지의 철거(4조)
 3. 미군철수 시까지의 미군 병력 교체(5조)
 4. 한(조선)반도 비핵화의 준수(11조)
 5. 주한미군 철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폐기(12조)
 6.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과 그 관리(22조)

7.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관리(23조)

8.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각기 외국군과의 연합 연습 및 훈련 중지
(24조)

9.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군사적 신뢰구축(25조)

10.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군축 이행 및 협의(26조)

② 국제평화감시단의 의장은 이 감시단이 정하는 기간을 주기로 각국 대표들이 윤번제로
말한다.

③ 국제평화감시단의 주요 소재지는 판문점에 둔다.

33조 국제평화감시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시반을 편성한다. 당사국들은 이 감시반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한다.

34조 국제평화감시단은 협의와 만장일치의 원칙 아래 운영된다. 국제평화감시단은 이 평화협
정 이행과 관련한 감시·감독 업무가 끝나면 종료된다.

8장 부칙

35조 이 평화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36조 이 평화협정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유효하다.

37조 이 평화협정은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38조 이 평화협정은 한국(조선)어, 영어, 중국어로 작성하고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008년 월 일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

| 내가 찾는 추진위원과 길잡이는... |

번호	이름	연락처	E-mail	기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추진위원' 이 되어 주세요



하나 신문광고 등 평화협정 실현운동 기금 1만원 이상을 냅니다.

둘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축구대회에 참석합니다. (날짜 시간 추후 공지)

셋 주변에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 추진위원(1만원 납부자)과 길잡이(1천원 납부자) 10명 이상을 모읍니다.

이름	전화번호
소속(단체 또는 직업)	
E - m a i l	
하고 싶은 말	

※ 서명 명단은 남·북·미·중 정부에 전달하고 신문에 광고로 냅니다.

2008년 월 일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하나 평화협정 실현운동 기금 1천원 이상을
냅니다.

둘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주위에 알립니다.

셋 평화협정 촉구 대회에 참석하도록 노력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소속(단체 또는 직업)	
E - m a i l	
하고 싶은 말	

※ 서명 명단은 남·북·미·중 정부에 전달하고 신문에 광고로 냅니다.

2008년 월 일